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 기간 내에 화성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5월 23일

동 탄 6 동 장



□ **공고기간 : 2026.05.23. ~ 2026.06.06.**

□ 공고대상 및 사유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주소	발급기간	공고사유
1	이*서	2009.05.19.	방*식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기흥로 479-12	2026.06.01. ~ 2027.05.31.	폐문부재 등
2	강*빈	2009.05.02.	강*성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감배산로 19		
3	강*희	2009.05.17.	최*희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감배산로 19		
4	이*건	2009.05.30.	이*임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기흥로277번길 59		
5	김*민	2009.05.25.	김*환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기흥로277번길 59		
6	김*준	2009.05.09.	김*진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부대로 1062		
7	김*빈	2009.05.11.	김*훈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로 150		
8	이*민	2009.05.28.	정*연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오산로 29		

□ **문의 :** 화성시 동탄구 동탄6동 주민등록증 업무 담당(☎031-5189-4312)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경과시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